

(주)신도리코 정관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5
제2조 (목적)	5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6
제4조 (공고 방법)	6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6
제6조 (일주의 금액)	6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
제8조 (주식의 종류)	7
제8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7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7
제10조 (신주인수권)	7
제10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7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7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8
제12조 <삭제>	8
제13조 (기준일)	9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4조 (소집시기)	9
제15조 (소집권자)	9
제16조 (소집통지 및 공고)	9
제17조 (소집지)	9
제18조 (의장)	9
제19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9
제20조 (주주의 의결권)	10
제21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10
제2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0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0
제24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0
제25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10

제 4 장 이사와 이사회

제26조 (이사의 수)	10
제27조 (이사의 선임)	11
제28조 (이사의 임기)	11
제29조 (이사의 보선)	11
제30조 (대표이사의 선임)	11
제31조 (이사의 직무)	11
제31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11
제32조 <삭제>	11
제33조 <삭제>	12
제34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12
제34조의 2 (상무회)	12
제35조 (이사회 결의방법)	12
제36조 (이사회 의사록)	12
제36조의 2 (위원회)	12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2

제37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12
제37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13
제37조의 4 (감사록)	13
제38조 <삭제>	13

제 5 장 계 산

제39조 (사업연도)	13
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4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14
제42조 (이익배당)	14
제42조의 2 (중간배당)	14
제43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15

제 6 장 보 칙

제44조 (보칙)	15
-----------------	----

부 칙

(주)신도리코 정 관

1969. 12. 24. 임시주주총회	1991. 3. 22. 정기주주총회
1970. 4. 1. 임시주주총회	1992. 3. 20. 정기주주총회
1970. 6. 13. 임시주주총회	1995. 5. 29. 임시주주총회
1973. 11. 23. 임시주주총회	1996. 2. 24. 정기주주총회
1974. 2. 19. 임시주주총회	1996. 9. 24. 임시주주총회
1974. 9. 20. 임시주주총회	1999. 3. 12. 정기주주총회
1975. 4. 1. 임시주주총회	2000. 3. 10. 정기주주총회
1976. 6. 28. 임시주주총회	2001. 3. 16. 정기주주총회
1976. 8. 20. 정기주주총회	2002. 3. 15. 정기주주총회
1978. 2. 14. 임시주주총회	2007. 3. 23. 정기주주총회
1978. 9. 15. 임시주주총회	2008. 3. 14. 정기주주총회
1980. 2. 14. 정기주주총회	2009. 3. 6. 정기주주총회
1981. 2. 14. 정기주주총회	2010. 3. 5. 정기주주총회
1982. 2. 13. 정기주주총회	2012. 3. 23. 정기주주총회
1983. 11. 3. 임시주주총회	2019. 3. 26. 정기주주총회
1985. 2. 18. 정기주주총회	2022. 3. 24. 정기주주총회
1986. 2. 28. 정기주주총회	2023. 3. 28. 정기주주총회
1987. 3. 27. 정기주주총회	2024. 3. 28. 정기주주총회
1989. 7. 1. 임시주주총회	2026. 3. 26. 정기주주총회
1990. 12. 11. 임시주주총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신도리코」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INDOH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터 및 그 관련부품, 소모품 제조판매업
2. 각종 사무용기기 및 그 관련부품, 소모품 제조판매업
3. 각종 감광지 제조판매업
4. 자가제품 수출업

5. 사무용 기계 및 장비의 제조, 임대 및 판매업
6. 사무용 기계 및 장비의 수입 및 수출판매업
7. CAMERA, 공기청정기판매업
8. 퍼스날 컴퓨터 제조판매업 및 자동인증기 제조판매업
9. 문서자동분류기(소터) 제조판매업
10. 금형제조업
11. 타자기, 프린터 및 그 관련부품, 전산소모품, 수입판매업
12. 영상프로젝터 제조 및 수입판매업
13.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노트북컴퓨터) 제조 및 수입판매업
14. 비디오프로젝터 제조 및 수입판매업
15. 부동산 임대업
1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공급, S/W 유지보수
17. 전 각 항 이외의 사무용 기계, 기구 및 그와 관련되는 부품, 재료 등의 제조, 임대, 국내 판매 및 수입업
18.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업
19. 기타 전 각 항에 관련 또는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및 필요한 사업의 영위 및 투자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 방법)

- ①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indoh.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②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천육백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오천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발행주식 총수의 1/4이내에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 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주주 전체의 이익 보호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 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2019. 3. 26)

제13조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4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5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주주의 의결권)

-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와 이사회

제26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며,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독립이사는 회사 및 계열사에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임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료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9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본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에 따라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0조 (대표이사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12. 3. 23)

제33조 (삭제 2012. 3. 23)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의 2 (상무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상무회를 둘 수 있다.
- ② 상무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6조의 2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7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의결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제37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7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2008. 3. 14)

제 5 장 계 산

제39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2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2조의 2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결의일로부터 1개

월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3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 6 장 보 칙

제44조 (보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의 단서, 제40조의 1항, 2항, 제42조의 2의 3항의 1호, 6호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제3항, 제12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작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7조의2(제4항은 제외)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